

1. 2024 행정절차론 전반에 대한 분석

1) 시험 난이도(상/중/하)

1문 물음1) - 상 (핵심요약집 p.15)

1문 물음2) - 중 (핵심요약집 p.18, 19)

2문 - 중 (핵심요약집 p.75, 76)

3문 - 상 (핵심요약집 p.86, 87)

4문 - 상 (핵심요약집 p.98)

2) 전체 총평

문제 난이도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작년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1번의 물음2를 제외하고는 기출 논점에서 다시 출제된 문제는 없었다는 점과 각 개별법에 서 조문 위치상 뒷 부분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평가합니다.

2. 각 문제별 분석

1번 문제의 물음 1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사업자(甲)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1번 문제의 물음2의 경우 불수리처분의 乙에 대한 절차이므로 거부처분의 절차가 논점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 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2번 문제는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 일반 분쟁조정절차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조문은 집단분쟁조정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시간이 가능하다면 분쟁조정절차 전반을 써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문제에서 제시한 목차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요약집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3. 수험 전략

행정절차 사례는 최근 들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논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점별 작성해야할 답안을 미리 준비하여 암기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만큼의 답안 작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즉 기본이론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한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약술 문제의 경우 적어도 핵심요약집의 내용은 빠짐없이 보셔야 합니다. 각 개별법의 경우 깊게 정리하기 보다는 넓게 정리하는 방법이 수험에는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문제 1】 甲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乙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40점)

(물음 1)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甲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되는지 검토하십시오. (20점)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할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명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당사자등

1) 개념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2) 자격

- (1) 자연인
-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3)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3) 사안의 적용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A시장의 수리처분은 乙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영업자인 甲은 영업자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물음 2)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乙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1. 사전통지

1) 대 상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유제시

1) 의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대 상

- (1) 원칙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2) 면제사유
 -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안의 해결

처분의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유제시의 경우 특별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문제 2】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집단분쟁조정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이미 구제가 끝났거나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주체는 제외)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2. 처리절차

1) 개시 공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처리기간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표자 선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조정절차에서의 제외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문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1.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1) 신청 기간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신청 방식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취하와 각하

1) 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공통점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약식재판을 확정한다.

【문제 4】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자율신고제도

-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